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52
----------	-------

발의연월일 : 2026. 2. 6.

발 의 자 : 김선교 · 김상훈 · 김성원
김미애 · 김대식 · 정동만
이헌승 · 구자근 · 안철수
최보운 · 김예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사제도 변경 등 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공지되어 학생들의 학업 계획 변경을 초래하고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하도록 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 전까지 개정된 학칙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학사제도 등 학칙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며 학교와 학생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학칙의”를 “제1항에 따른 학칙의”로, “정한다”를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안내의 기간·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칙의 내용을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학칙을 개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 전까지 개정된 내용을 추가로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학교규칙) ① (생 략)	제6조(학교규칙) ① (현행과 같 음)
<u><신 설></u>	<u>② 학교의 장은 학칙의 내용을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 지 학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학칙을 개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 전까지 개정된 내용을 추가로 안내하여야 한다.</u>
<u>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학칙의----- -----정 하고, 제2항에 따른 안내의 기 간 · 방법 · 절차 등 필요한 사 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 육부령으로, 공립 ·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